##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민병덕

박희승・박 정・김정호

송옥주 · 민형배 · 서영교

한정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 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10만원을"을 "30만원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	지급액) ① <u>18세</u>
만의 아동에게 매월 <u>10만원을</u>	30만원을
지급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u>1</u>
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8세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②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8세</u>	<u>1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 ④ (생 략)

-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
<u>1</u> 8세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u>18</u>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